

안산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

안 산 시

안산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990
----------	------

제출년월일 : 2017.05.26.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안산시 향토문화의 보존 및 전승 사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산시 문화원사(수탁기관:안산문화원)의 위탁기간이 2017.10.24.자로 만료됨에 따라
- 위탁운영기관의 실적 평가를 통한 재위탁을 추진하여 전문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탁현황

- 시 설 명 : 안산시 문화원사
- 수 탁 자 : 안산문화원
- 위 치 :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44 (사동)
- 운영인력 : 8명(원장 1, 사무국장 1, 전문위원 1, 직원 5)
- 위탁기간 : 2014. 10. 25. ~ 2017. 10. 24.(3년)
- 운영예산 : 380,524천원(2017년 안산문화원사 위탁 운영 예산)
- 사업내용 :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및 제4조 등
 - 위탁 시설 및 물품 등 재산의 유지관리
 - 업무시설(사무실, 문화원장실, 강사대기실, 사학연구실 등)
 - 향토자료실(전시실, 수장고 등)
 - 교육실(문화교실, 공연실, 자료실, 연습실 등)
 - 지원시설(기계실, 전기실 등)
 - 기타 야외시설(전통초가, 민속공연 시설)
 - 사업의 수행
 - 향토자료의 조사 및 연구
 - 향토문화 자료의 구입, 보존 및 전시
 - 향토문화와 관련한 강연회 및 강습회 등의 개최
 - 향토문화와 관련한 간행물의 제작·배포 및 교육
 - 기타 향토문화의 창달에 관한 사업
 - 시설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

나. 재위탁 계획

- 시 설 명 : 안산시 문화원사
- 위 치 :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44 (사동)
- 위탁기간 : 2017. 10. 25. ~ 2020. 10. 24.(3년)
- 위탁사무 : 안산시 문화원사 시설 관리 및 운영
- 운영예산 : 380,524천원(2017년 기준)
- 위탁방법 : 현(現) 수탁기관에 재위탁(재계약)
 - 재위탁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시설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추진 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 심사평가 후 재위탁 여부 결정
 - 단, 평가점수 70점이상 시 재위탁(재계약), 부적합 시 공개모집

☐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탁관리)
-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위탁기간의 연장)
-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위탁기간의 연장 등)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안산시 문화원사는 안산시 향토문화의 보존 및 전승 사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문화 시설로써,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이 요구되므로
- 문화원사는 문화관련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1
- 안산시 문화원사 재위탁 추진계획 : 붙임 2

관계법령 발췌서

□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문화원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일정한 능력을 갖춘 자에게 문화원사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8.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문화원사의 관리·운영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및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위탁기간을 정하여 사전에 안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5조제9호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23.)

④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루어진 민간위탁사무는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5.11.23.)

⑤ 시장은 민간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23.)

제11조(위탁기간의 연장) ① 수탁기관은 위탁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제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 그 결과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3.)

③ 재계약은 1회에 한한다. (신설 2015.11.23.)

④ 위탁기간의 연장 방법과 절차, 기준 등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5.11.23.)

□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위탁기간의 연장 등)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제6조에 따라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수탁기관 평가 결과 및 사업수행 능력(인력,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능력)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붙임 2 >

등록번호	문화예술과-8355	실무관	문화종교계장	문화예술과장	복지문화국장	부시장	시장
등록일자	2017. 05. 15.						2017. 5. 15.
결재일자	2017. 05. 15.	노영임	우호덕	박양복	박광옥	양진철	재종길
공개구분	비공개(6)	협 조 조직교육계장 김준기					

[의견]

상상 그 이상을 꿈꾸는 도시, 사람 중심 안산특별시

민간위탁 기간만료에 따른 안산시 문화원사 재위탁 추진계획

- 위 탁 대 상 : 안산시 문화원사
- (현)위탁기간 : 2014. 10. 25. ~ 2017. 10. 24.
- (현)수 탁 자 : 안산문화원
- 위 탁 방 법 : **재위탁(재계약)**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현 위탁기관 재계약은 사업실적 심사평가 후 재위탁**
 - **평가점수 70점 이상 시 재계약, 부적합 시 공개모집**
- 위 탁 기 간 : 2017. 10. 25. ~ 2020. 10. 24. (3년)



**복지문화국
문화예술과**

민간위탁 기간만료에 따른 안산시 문화원사 재위탁 추진계획

- 안산시 향토문화의 보존 및 전승사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산시 문화원사의 위탁기간이 2017.10.24.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운영기관의 실적 평가를 통한 재위탁을 추진하여 문화원사의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I 관련규정

-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탁관리)
 - ③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④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의 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루어진 민간위탁사무는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5.11.23.)
-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위탁기간의 연장)
 - ③ **재계약은 1회에 한한다.** (신설 2015.11.23.)
-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위탁기간의 연장 등)

II 추진방향

- 사업의 연계성 및 업무추진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수탁기관에 재위탁(재계약) 추진

- 현재 수탁기관인 안산문화원의 위탁 운영기간 연장신청 시 재위탁(재계약)은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심의위원회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 실시
 - ☞ 조례 제11조 제3항에 재계약 1회 가능 (신설 2015.11.23.)
- 재위탁(재계약)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시설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사업추진 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을 심사·평가 한 후 재계약 여부 결정
 - ☞ 평가점수 70점 이상시 재계약, 부적합 시 공개모집
- 위탁기간 : 2017. 10. 25. ~ 2020. 10. 24. (3년)
 -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탁관리)에 따라 3년으로 함

III 문화원사 현황

- 시설현황
 - 위 치 :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44 (사동)
 - 면 적 : 대지면적 : 27,915m², 연면적 2,159m²
 - 개 관 일 : 2005. 12. 16. (위탁 2005. 10. 25. ~ 현재)
 - 건 립 비 : 4,400백만원 (국비 280, 도비 280, 시비 3,840)준공 '05.10.22
 - 규 모 : 지하 1층, 지상 3층
 - 주요시설 : 향토사박물관(전시실), 향토사연구소, 문화교실, 소강당, 사무실, 전통초가 등
- 문화원사 위탁현황

수탁기관	원 장	위탁기간	비 고
안산문화원	이 정 태	2005. 10. 25. ~ 2008. 10. 24.	
안산문화원	김 봉 식	2008. 10. 25. ~ 2011. 10. 24.	
안산문화원	김 봉 식	2011. 10. 25. ~ 2014. 10. 24.	
안산문화원	김 봉 식	2014. 10. 25. ~ 2017. 10. 24.	

○ (현) 수탁기관 : 안산문화원(대표 : 김봉식)

- 직 원 현 황 : 8명 (원장 1, 사무국장 1, 전문위원 1, 직원 5)
- 최초운영일 : 2005. 10. 25. ~ 현재
- 민간위탁금 : 380,524천원(2017년 안산문화원사 위탁운영 예산)
- 보 조 사 업 : 472,000천원(성호문화제 등 20개 사업)

👉 2017년 보조사업 예산현황 【붙임1】

IV

세부 추진계획

○ 「안산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제출 : 2017. 5.

○ 재위탁 운영계획 통보(現. 수탁기관) : 2017. 7.

- 수탁기관의 위탁 운영기간 연장 신청 : 만료일 90일전까지 제출
 - 기한 내 미제출시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공개모집
-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항 위탁기간 연장의 재계약은 1회에 한한다. (신설 2015.11.23.)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2017. 8.

- 구성인원 : 9명(위원장, 부위원장, 7명)
- 위원임기 : 안산시 문화원사 재위탁(재계약) 심사완료 후 자동해산
- 위 원 장 : 심사위원회 개최 시 호선
- 위원위촉 :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위원회 개최 시 구성
 - 관계공무원, 전문가, 관련분야에 풍부한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 관계공무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2017. 9.

< 심사방법 >

- 심사위원의 신청법인 서류 사전 검토
- 재위탁 신청법인 운영계획 등 발표 및 심사위원 질의답변
- 제출서류, 발표 및 질의답변 등을 참고하여 심사기준 배점표 작성

< 심사내용 > 📄 수탁기관 선정 심사 기준 및 배점표(안) 【붙임2】

- 수탁자의 적격성(30점)
- 문화사업 수행능력(20점)
-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50점)

< 수탁자 선정 >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탁법인 사업실적 등 평가결과 70점 이상을 득할 경우 위탁법인으로 선정
 - 최고·최저 심사위원 점수를 제외한 점수합계의 평균
- 평가결과 70점 미만 시에는 공개모집을 하되, 수탁자 결정 시 까지 현 위탁운영 법인 기간 연장 운영
- 자료 미체출 및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점수는 "0점"처리

○ 재위탁(수탁법인) 결정 공고 : 2017. 10.

○ 안산시 문화원사 위·수탁 관리·운영 협약 체결 : 2017. 10.

📄 안산시 문화원사 위·수탁 관리·운영 협약서(안) 【붙임3】

- 붙임 1. 2017년 보조사업 예산현황(안산문화원) 1부.
2. 수탁기관 선정 심사 기준 및 배점표(안) 1부.
3. 안산시 문화원사 위·수탁 관리·운영 협약서(안) 1부.
4. 안산시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부.
5. 안산시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시행규칙 1부.
6.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1부. 끝.